

2024 법무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갱신 및 가입 안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법무사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보험가입기간은 2024년 8월 2일부터 2025년 8월 2일까지이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개시일(보험료 송금일자)로부터 2025년 8월 2일까지입니다. 갱신 가입의 경우에는 2024년 8월 1일(목)까지 가입 신청 및 보험료 입금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록톤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ocktonpi.com)를 사용하여 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이 진행됩니다. 안내문 3페이지의 가입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무사배상책임보험 기본사항

- □ **담보내용:** 법무사로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인해 고객 및 제3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액 및 사고처리 제비용 보상
- □ **보험기간:** 2024.8.2 00:01 ~ 2025.8.2 00:01 (단,8.2일 이후 신규가입시 가입일부터 2025.8.2일)
- □ **보험회사:** DB손해보험㈜
- □ 계약자 및 피보험자: 대한법무사협회가 계약자이며, 보험 가입하는 각 법무사가 피보험자임
- □ 도입경과: 2010.7.6일 대한법무사협회, 국내손해보험사 및 록톤코리아 단체협약 체결 도입
- □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보상한도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을 뜻하며,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자기부담금 이하금액은 보상되지 않음. 본 상품은 매출액 구간에 따라 총 9가지(최소5천만원~최대연간 총5억원)의 보상한도가 선택 가능하며, 자기부담금 300만원을 기본으로 함. 단, 자기부담금 500만원 선택시 -5%, 1천만원 선택시 -10%가 기본보험료에서 할인 적용
- □ 사무원 부정행위 특별약관(선택가입 사항으로 추가보험료 발생): 2016.8.2일부터 신설 본 특별약관은 법무사가 입은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하며, 이는 고의적이고 명백한 의도에 의한 직접 결과이거나 혹은 고용한 사무원이 법무사를 대신하여 전문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무원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단독/타인과 공모하여 행한 부정행위 또는 사기행위에 기인한 것을 전제로 함.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등의 세부사항은 별첨의 사무원 부정행위 담보에 관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 □ <u>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무사 자신의 손해도 충분히 보장</u>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이행보증보험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법무사의 손실은 보장받지 못함)
- □ 사고처리를 보험회사가 대행하여 시간절약, 법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 □ 보험료가 개별가입 대비 저렴합니다.(단체계약 효과)



- □ 협회 단체보험이므로 보험료 협상 및 보상처리에 유리합니다.
- □ 법무사의 보험가입으로 임.직원이 수행한 업무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 소송이 없어도 피해자의 배상청구가 있으면 보험사고 접수 후 보상 됩니다.

3. 법무사배상책임보험 질문/대답

□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강제됩니까?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와는 달리 가입할지 여부를 법무사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 보험에 가입하면 공제나 이행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이행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등은 법무사법 제26조가 위임인의 법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임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무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고의로 위임인에게 입힌 손해도 보상을 해 주지만(단, 법무사에게 구상권 행사함) 법무사배상 책임보험은 법무사나 그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법무사나 직원이입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혀 별개의 보험으로 대체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보상 되나요?

법무사배상책임보험은 과실로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하며 고의에 기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 및 사기행위"로 인한 법무사의 금전적 손실은 특별약관 선택 가입(추가 보험료 발생)을 통하여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에 적용되는 배상청구기준증권은 무엇인가요?

이 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 이후에 수행한 업무로 인해 보험 기간 종료일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때에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계속적인 보험갱신이 이뤄지면 연속된 담보가 되나 보험갱신이 되지 않거나 해지하는 경우, 기존 보험기간 동안 이뤄졌던 업무라 하더라도 만기일 또는 해지일 이후 배상청구 되는 때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보고연장기간 70일 적용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종료일로부터 70일까지만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의 계속적인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보험금 지급 사례 (1건 4천8백만 원 지급됨)

□ 위조서류상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 하여 손해배상

사건 경위: 법무사 사무장이 A캐피탈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임받고 A사 직원과 부동산 소유자라는 B와 만나 관련서류를 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서류 작성, 등기 접수 후 A사에 통보. 이에 A사는 B에게 대출금 1억8천만원을 지급. 그러나 이후 B가 서류를 위조해 타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A사는 법무 사에게 손해배상청구 함.



처리 결과: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법무사를 대신해 A사와 손해액 중재를 하였고, 결국 법무사의 과실을 30%로 확정(법무사의 과실이 있으나 그보다는 피해자 A사가 서류 위조사실과 본인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더 크다는 법률검토 근거). 보험사는 손해액 1억8천만원의 30%인 5,400만 원 중 본인부담금등을 차감한 4,800만원을 지급함.

5. 보험 갱신 및 가입 절차

록톤코리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후 가입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www.locktonpi.com [네이버 검색창에 '록톤코리아' 검색]

* '다음' 검색창은 사용 X

- ①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계약 갱신' 클릭 (가입정보 확인, 보험조건 선택, 최종 보험료 확인)
 - * 신규 가입자는 '가입 신청' 클릭 후 진행
- ③ 매출액 입력시 매출액 구간 자동 설정 (직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업무보고서 참조)
 - * 2인 이상 복수가입시 합동 및 법인 소속법무사의 1인당 평균매출액 기준
- ④ 무사고할인율 및 사고할증율 자동 계산
- ⑤ 사무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 확장추가담보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무사고 할인율 또는 사고할증율 적용하지 않음.
- ⑥ '신청서 최종제출' 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 전에는 보험조건 변경 가능)
 - * 증명서 출력은 8월 5일부터 가능하며 그 이후는 보험료 납부 2일후 가능
 - * 보험료 납부 : 신한은행 / 140-005-862100 / 록톤컴퍼니즈코리아
- → 복수가입(법인/합동 등)은 록톤에서 아이디를 부여하오니 록톤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신규 가입하시는 개인 법무사님은 "법무사등록증"을 먼저 록톤으로 보내 대한법무사협회 회원을 확인후 가입이 진행되니 "법무사등록증" 팩스 송부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서비스

https://www.locktonpi.com

전화: 02) 2011-0300

팩스: 0503-8379-2008.02)2011-0301

담당: 이순옥 상무, 윤원 이사,

윤자영 부장, 박순정 과장, 이채은 주임



별첨> 2024 대한법무사협회 요율 테이블

○ 기본 담보 보상한도액 및 보험료

1. 개인사무소 - 법무사 개인

(단위: 원)

	보상한도액 (1청구당/연간총)	매출액별 법무사 1인당 연간보험료							
구분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 1억원	1억원~ 2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5억원	5억원~ 7억원	7억원~ 10억원	
Case 1	5천만원/1억원	106,500	118,600	152,100	198,000	228,700	262,400	299,100	
Case 2	1억원/1억원	129,800	143,800	185,800	242,800	280,200	323,100	368,300	
Case 3	1억원/2억원	142,000	157,800	205,400	266,200	307,200	354,000	403,500	
Case 4	1억원/3억원	156,000	173,700	225,100	293,200	337,100	388,500	442,900	
Case 5	1억원/5억원	175,500	195,100	254,000	328,800	381,000	437,100	498,200	
Case 6	2억원/2억원	218,500	242,800	315,600	410,900	473,500	544,400	620,500	
Case 7	2억원/4억원	252,200	280,200	362,300	471,600	544,400	625,700	713,200	
Case 8	3억원/3억원	265,200	294,200	381,000	495,000	571,600	657,500	749,500	
Case 9	3억원/5억원	276,400	307,200	398,800	519,300	597,700	687,400	783,500	

2. 합동사무소 / 합동법인 (복수가입시 총보상한도 적용 및 할인율)

3명 이상의 동일 합동사무소 및 합동법인 소속 법무사가 상기 보상한도 공유시 사무소 및 법인의 연간 총보상한도액은 상기 보상한도액의 두배로 제한되며, 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할인 적용됩니다. (단, 법무사 수가 2명이면 연간 총보상한도액은 상기 연간총한도와 동일함) 분사무소의 개별가입시 기초수는 해당 분사무소 법무사의 인당 매출액 및 법무사수로 적용합니다.

법무사 수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총보상한도	X 1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2	X 2
할인율 (%)	10%	15%	18%	21%	24%	27%	30%	33%	35%	37%	39%	40%



○ 기본 담보 보험요율 적용

1. 자기부담금: 3백만원 - 1청구당 기준

단, 자기부담금 5백만원(1청구당) 적용시, 상기 요율 대비 5% 할인 적용 자기부담금 1천만원(1청구당) 적용시, 상기 요율 대비 10% 할인 적용

2. 무사고 갱신시 할인율(보험가입 후 무사고기간 따른 할인적용)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이상
5%	8%	10%	12%	14%	16%

3. 사고 갱신시 할증 (보험금수령에 따른 사고자 할증율 3년간 차등 적용함)

보험금 규모	1년차	2년차	3년차	
1천만원 이하	30%	0%	-5%	
3천만원 이하	60%	30%	0%	
5천만원 이하	100%	60%	30%	
1억원 이하	150%	100%	60%	
1억원 초과	200%	150%	100%	

O Dishonesty Extension 특약 보험료

(사무원의 횡령 등 부정행위담보 특별약관 : 선택적 담보)

보상한도액 (1청구당 / 연간총)	자기부담금 (1청구당)	사무원 1인당 보험료		
25백만원 / 25백만원		90,000원		
5천만원 / 5천만원	5백만원	101,000원		
1억원 / 1억원		140,000원		

- 추가 특약담보의 보상한도는 각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기본 담보상 청구당 보상한도의 5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상한도는 개별 사무원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원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구득으로 록톤코리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